

# 「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1(화) 이정율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1. 11. 9(수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1. 9(수) 제1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발의의원 대표 이정율)

-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시행되는 개정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·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-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“7일 이내”에서 “9일 이내”로 연장  
(안 제2조제2항)
- 서류 미 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기준 마련(안 제17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

감사를 실시한다는 근거 규정인 「지방자치법」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“7일” 이내에서 “9일” 이내로 연장 되었으며
  - 서류 미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